

개인보증 이행 및 관리 관련

특정감사 실시 계획

2017. 11



I. 감사실시 개요

1 감사 목적

- 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,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개인보증의 보증사고시 사고처리, 이행절차, 대위변제금 회수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함으로써, 제반 업무 처리의 적정성 확인 및 관련 제도개선 사항 도출

2 감사 중점사항

구분	감사중점사항
개인보증의 이행	▪ 개인보증(전세보증금반환, 주택구입자금보증 등) 사고시 사고처리, 이행절차의 준수 및 적정성 여부
대위변제금의 회수	▪ 개인보증 이행에 따른 대위변제금 회수 절차의 준수 및 채권관리의 적정성 여부
제도개선	▪ 개인보증 사고처리, 보증이행 및 채권관리 규정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도출

3 감사인원 및 기간

- ☐ (감사인원) ○○○ 팀장, ○○○ 감사역

감사인	업무분장	감사방법
○○○ 반 장	▪ 특정감사 업무 총괄	서면 또는 실지감사
○○○ 감사역	▪ 개인보증 사고처리, 보증이행, 채권회수의 적정성 점검 ▪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	

- ☐ (감사기간)

- 본 감사 실시 : 2017. 12. 4. ~ 12. 6. (3영업일)
- 예비조사 실시 : 2017. 11. 27. ~ 11. 30.

- 감사준비회의 및 사전 교육 실시 : 2017. 12. 1.
- 감사 결과 보고 기한 : 2018. 1. 5.

4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

- ☐ (감사범위) 2012. 1. 1. ~ 2017. 10. 30. 간 발급한 개인보증
- ☐ (대상부서) 채권관리실, 보증이행처, 전 영업부서

II. 주요 예상 문제점

1 예비조사 개요

- ☐ (예비조사 기간) 2017. 11. 27. ~ 11. 30.
- ☐ (대상 부서) 채권관리실, 보증이행처, 전 영업부서
- ☐ (조사 방법) 전산데이터 추출, 업무담당자 면담 및 서면을 통한 자료 작성 요청

2 예비조사 주요 예상 문제점

- ☐ 개인보증 사고처리 및 보증이행을 적정하게 하지 않을 우려
 - (내 용) 보증별 사고 처리 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, 보증 이행시 이행심사를 통해 규정 등 절차에 맞게 보증이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적정하게 하지 않을 우려

- (접근방법) 보증 건별 사고처리 및 보증이행 현황, 관련 절차 준수 여부 확인, 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 면담

□ 개인보증 대위변제 후 채권회수를 적정하게 하지 않을 우려

- (내용) 개인보증 대위변제 후, 보증채권자가 보유한 담보물, 금전 반환청구권 등 채권,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대위 행사하여야 하나 이를 적정하게 하지 않을 우려
- (접근방법) 보증 건별 구상채권 회수현황 및 절차 준수여부 확인, 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 면담

Ⅲ.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

□ (감사결과 보고)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상근감사 위원에게 보고

- 사규 위반사항 등 발견 시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 제17조에 의거 조치

□ (감사결과 통보·점검) 감사결과 지적·개선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고, 매분기 이행실적 점검

□ (감사결과 공유·공시) 감사결과를 사내전산망에 등록(GW-알림나라-자료실-감사자료실)하여 전직원에게 공유하고,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,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